

2024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 사업 공고

도 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경기도가 지원하는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2.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도내 중소·중견기업 제조 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 경쟁력 향상
- 도입기업 현장운용기술과 정보통신기술 간 융합 전략 수립 및 현장 수요 맞춤형 구축이 가능하도록, 구축 전·중·후 단계별 컨설팅 제공

□ 지원내용

- 유형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유형 1~4 중 택일, 사업기간 최대 7개월

항목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지원내용	사전컨설팅, 설비, 솔루션 구축	설비, 솔루션 구축	특수목적 (안전, 에너지·탄소중립, 보안 등)	제조데이터 구축
지원규모	30개사	30개사	5개사	5개사
지원금 (총 사업비의 70%*)	50,000천원	50,000천원	85,000천원	85,000천원
지원대상	중소 제조기업 (기 수혜기업 지원 불가)		중소·중견 제조기업, (기 수혜기업 지원 불가, '23년에 '유형3, 4' 미수혜기업 지원 가능)	

* 총사업비(100%) = 도비(70%) + 기업 자부담(30%)

* '19 ~ '23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의 '유형1' 혹은 '유형2' 수혜기업은 '24년 사업의 '유형3' 혹은 '유형4'만 신청 가능

* '23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유형3' 혹은 '유형4' 수혜기업은 신청 불가

○ 단계별 컨설팅 지원

- (사전컨설팅) 현장 진단, 구축 방향제시, 사업계획서 작성지원 등 (유형1)
- (전문컨설팅) 구축지원 선정기업 대상 구축과정 중 애로 해결 지원 (유형1~4)
- (사후컨설팅) 상위단계 수준 진입전략 수립 등 (차년도, 유형1~4)

2. 세부 지원내용

□ 유형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이하, '구축지원')

○ (유형1,2. (사전컨설팅), 설비, 솔루션 구축)

- (사전컨설팅) '유형1'만 지원하고, '유형2'는 지원하지 않음
 - * '유형1'은 사전컨설팅을 제공하며, 구축기간은 최대 5개월
 - * '유형2', '유형3', '유형4'는 사전컨설팅이 없으며, 구축기간은 최대 7개월
- (설비) 스마트공장 솔루션 연동 자동화 장비·제어기 센서 등
 - * 데이터 생성 및 활용이 가능한 설비로서 스마트공장 솔루션과 연동 필수
- (솔루션)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등
 - * ICT연계 생산시스템, 실시간 최적화(POP/MES), OCT연계 자동화 시스템 등

○ (유형3. 특수목적) 안전, 에너지·탄소중립, 보안 분야 솔루션 구축

- (안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설비 및 솔루션
- (에너지·탄소중립) 에너지 사용현황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솔루션, 에너지 효율개선 및 탄소저감을 위한 설비 및 솔루션
- (보안) 스마트제조 보안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및 보안솔루션 적용

○ (유형4. 제조데이터 구축) 제조 데이터 활용을 위한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및 설비·공정·시스템 데이터 연동 등 첨단기술 도입(AI, 디지털 트윈 등)

□ 단계별 컨설팅 지원 (이하, '컨설팅지원')

추진절차	지원규모	지원 대상 및 내용
사전컨설팅	60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구축지원 '유형1' 신청기업 중 60개사 선정 • (내용) 현장 진단, 구축 방향제시, 사업계획서 작성, 공급기업 검토 등
전문컨설팅	70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구축지원 선정기업 70개사 - 모든 유형(1~4)의 수혜기업 대상으로 구축과제 진행 중 컨설팅 수행 • (내용) 적정 스마트공장 구현, 과제 진행사항 점검, 공급사 계약관리, 납품검수, 구축과정 중 애로해결 지원 등
사후컨설팅 (차년도 지원)	70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구축지원 완료기업 70개사 (2025년 예정) • (내용) 구축 시스템 활용 및 안정화, 고도화 구축 계획수립 지원 등

* 유형1의 경우, 신청기업 중 서면평가를 통해 60개사 선정 후, 사전컨설팅을 진행하고 (약 1.5 ~ 2개월), 이후 세부사업계획서 접수 및 발표평가를 통해 구축지원 기업 선정

* 유형2~4의 경우, 신청기업 중 서면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을 선정하고(유형별 2.5 배수), 이후 발표평가 및 현장 확인을 통해 구축지원 기업 선정

□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도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5인 이하 소기업 가점부여)

- 사업자등록증명원의 사업자번호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사업장으로 신청 가능하며, 종된 사업장의 경우 증빙서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를 통해 신청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유형 1,2는 중소기업만 지원 가능하며, 중견기업 지원 불가

※ 참여자격 제한대상

· 휴폐업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동일 과제 타 기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수혜기업 (구축내용이 다르면 신청 가능)

○ (지원조건)

- 구축지원은 총 사업비의 70% 이내 도비 지원, 나머지는 기업부담(현금, 현물)
- 도입기업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10% 이내 계상 가능(현물 100%)
- 컨설팅지원 및 교육지원은 기업부담금 없음
- 구축장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주소지와 동일해야 하며, 모든 설비 및 솔루션은 구축장 내에 구축하여야 함
- 구축지원 접수 및 평가 결과, 고득점순으로 선정과제 및 후보과제*를 정하며, 특정 유형의 적격기업 수가 부족한 경우, 해당 유형의 지원예산을 타 유형으로 전환하여 지원 가능

* 후보과제 : 평가결과 미선정되었지만, 선정과제 포기 또는 중도 해약시, 혹은 지원 예산 추가확보시 지원가능한 과제

- 구축지원 및 컨설팅지원 예산 추가 확보 시, 별도 공고 없이 본 공고를 통해 접수한 기업 중 후보과제를 대상으로 추가지원 가능
- 구축지원 선정기업은 경기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전문·사후 컨설팅 지원 및 디지털전환 교육* 필수 이수

* 스마트제조기술 및 제조데이터·AI 교육 등 (선정기업 대상 별도 안내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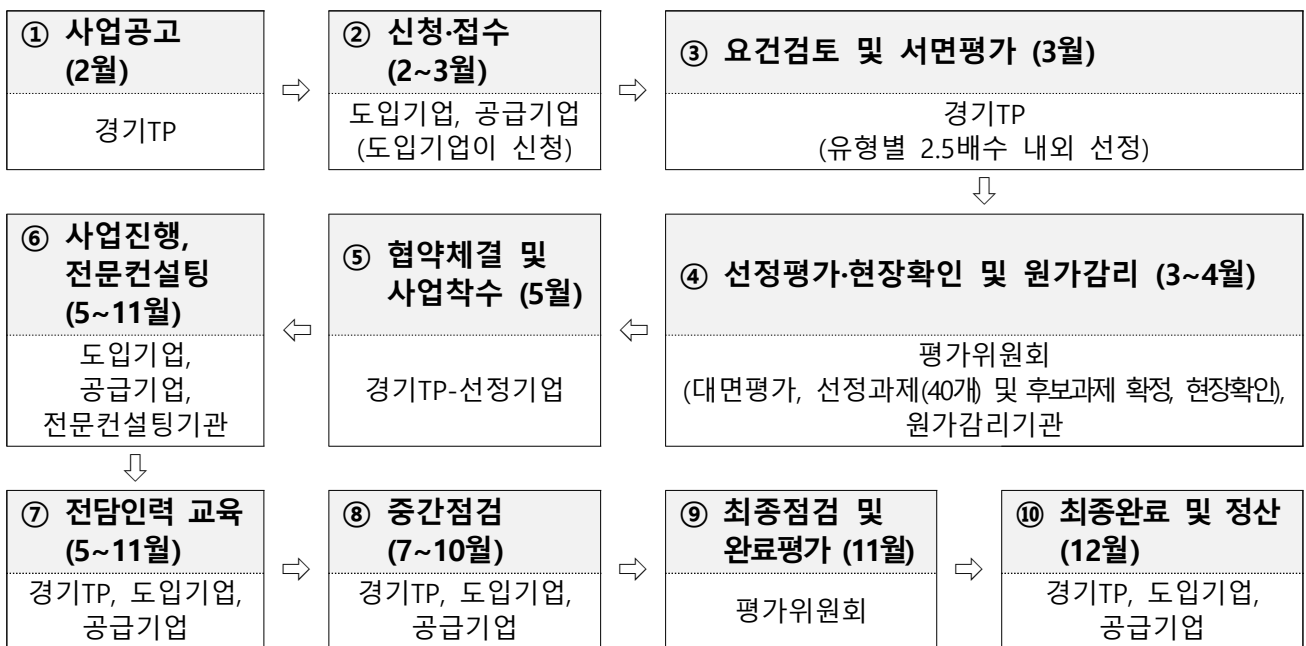
- 지원사업 신청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실이 협약체결 이후 확인된 경우, 협약 해약 및 도 지원금 환수 가능
- 도입기업은 과제 지원 후 실시하는 만족도 및 성과조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우수 지원사례 홍보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지원절차

○ (유형1)



○ (유형2~4)



※ 일정 및 절차는 신청과제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변동 될 수 있음

□ 평가 기준 및 가점·감점 사항

○ (서면평가 기준)

구 분	항 목	배점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및 목적(30)	-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및 목적	10
	- 스마트공장 장기적 비전 및 구축 의지	20
구축 방향, 단계적 구축 계획(30)	- 스마트공장 구축 방향	15
	- 구축 방향에 따른 단계적 구축 계획	15
금회 구축 세부계획 (30)	- 구축 희망 내용의 체계성	15
	- 구축 기간, 참여인력, 사업비의 적정성	15
사업의 파급효과 (10)	- 스마트공장 도입을 통한 현장 개선 효과	5
	- 제조경쟁력 향상 효과(품질, 생산 납기 등)	5
합 계		100

※ 경기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당해연도 디지털 전환 교육(2~3월 중, 별도공고) 수료 시, 정성평가 '구축 의지' 반영 가능

○ (발표평가 기준)

구 분	항 목	배점
기업 역량 및 스마트공장 구축 의지(40)	- 종업원 수, 매출액 등 기업 현황이 양호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인가?	10
	- 도입기업의 자부담비율, 사전컨설팅 수혜, 교육 수료 등 스마트공장 구축 의지가 충분히 강한가?	20
	- 공급기업의 사업수행 전문성 등 역량이 충분한가? (공급기업 역량 진단 참여,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 수행 등)	10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10)	- 구축하고자 하는 솔루션 및 도입 설비의 금액 등 사업비 구성이 적절한가?	10
스마트공장 지원 적정성(40)	- 데이터집계 포인트의 제시가 도입기업 제조공정도를 토대로 각 공정별 수집 대상 데이터의 종류와 집계방법(자동, 반자동, 수동)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15
	- 솔루션 기능 구성도가 도입기업 업종의 목표수준에 부합되는 기능으로 적절히 제시되었는가?	15
	- 추진조직 및 업무분장과 지원계획 등에서 도입기업/공급기업의 투입인력이 사업수행에 적절한가?	10
사업의 파급효과 (10)	- 스마트공장 도입을 통한 현장 개선 효과가 뚜렷한가?	5
	- 제조경쟁력 향상 효과(품질, 생산 납기 등) 가 우수한가?	5
합 계		100

※ 경기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당해연도 디지털 전환 교육(2~3월 중, 별도공고) 수료 시, 정성평가 '구축 의지' 반영 가능

○ (가점 사항) 신청기업이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5점 적용

구분	가점 항목	증빙서류	배점
1	5인 이하 기업 (전월 사업장 고용보험가입증명서 제출 기업)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증명원 또는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5
2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공문	3
3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기업	착한기업 인증서	1

※ 사업신청시 증빙서류 제출

○ (감점 사항)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11개 법률 위반사항과 관련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서면, 대면 평가 총점의 20%감점 적용

적용법률		범위반사실 여부 확인 및 조회	비고
1. 공정	① 공정거래법	(소관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서류제출) 건별 범위반 사실 확인서 (조 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사건심사·의결 조회 위반사실 여부 조회	신청기업 일괄조회 (신청자 미제출)
	② 하도급법 ③ 표시광고법		
2. 노동	④ 근로기준법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기업소재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청 (서류제출)기업소재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청 범위반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신청 발급 (조 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 지방청 범위반사실 여부 조회	신청기업 일괄조회 (신청자 미제출)
	⑤ 산업안전보법		
3. 환경	⑥ 폐기물관리법	(소관기관) 환경부, 기업소재 관할 시군 (서류제출) 환경부, 기업소재 관할 시군 행정처분 내역 및 범위반 사실 확인서 등 증빙서류 신청 발급 (조 회) 환경부, 기업소재 관할 시군 범위반사실 여부 조회	신청기업 일괄조회 (신청자 미제출)
	⑦ 대기환경보법		
	⑧ 소음진동관법		
	⑨ 물환경보전법		
4. 납세	⑩ 국세기본법	(소관기관) 세무서, 기업소재 관할 시군 (서류제출) 세무서, 기업소재 관할 시군 범위반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신청 발급, 국세·지방세 완납증명 (조 회) 세무서, 기업소재 관할 시군 범위반사실 여부 조회	과제 신청시 제출
	⑪ 지방세기본법		

- 사업 선정 후 과거 법 위반 사실(11개 법률) 확인 시 사업 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 사업 선정 후 신규 법 위반(11개 법률) 시, 협약해약

○ (현장확인 점검 항목) 현장확인 시 1개 이상의 '부' 항목이 있는 경우 협약 대상 제외

점 검 항 목		확인여부
사업계획서 대조·확인	○ 구축 대상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휴·폐업 등)	적/부
	○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공정, 설비 등 일치 여부	적/부
	○ 기 보유설비 이상 유무(정상가동 등)	적/부

3. 신청 및 접수 안내

□ 기간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유형1) 2024년 2월 2일 ~ 2월 29일 18:00 까지 신청·접수
- (유형2~4) 2024년 2월 2일 ~ 3월 8일 18:00 까지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유형1)

구분	제출서류	필수여부	비고
1	사업신청서	필수	불임자료1
2	2024년 스마트공장 활용계획서	필수	불임자료2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	필수	불임자료3
4	기업의 범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필수	불임자료4
5	기업의 범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약약서	필수	불임자료5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국세납세증명서: 홈택스-민원증명-국세증명신청-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정부24-지방세 납세증명서 검색-민원출력	필수	참여자격 제한사항 확인
7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종된사업장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추가 제출 * 홈택스(www.hometax.go.kr)-민원증명-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필수	도내기업 여부 및 구축장 확인
8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증명원 또는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또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에서 발급	해당시	5인이하 가점 및 도입기업 인건비 확인
9	우대가점 증빙서류	해당시	가점증빙 확인

- (유형2~4)

구분	제출서류	필수여부	비고
1	사업신청서	필수	불임자료1-1
2	2024년 스마트공장 활용계획서	필수	불임자료2
3	2024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사업계획서	필수	불임자료7
4	(SW개발비)사업비 산출내역서	필수	별도첨부
5	(도입, 공급)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	필수	불임자료3
6	(도입)기업의 범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필수	불임자료4
7	(도입)기업의 범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약약서	필수	불임자료5
8	(도입, 공급)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국세납세증명서: 홈택스-민원증명-국세증명신청-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정부24-지방세 납세증명서 검색-민원출력	필수	참여자격 제한사항 확인
9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종된사업장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추가 제출 * 홈택스(www.hometax.go.kr)-민원증명-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필수	도내기업 여부 및 구축장 확인
10	(도입)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증명원 또는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또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에서 발급	해당시	5인이하 가점 및 도입기업 인건비 확인
11	우대가점 증빙서류	해당시	가점증빙 확인

□ 신청 방법

- 경기테크노파크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https://pms.gtp.or.kr>)
 - 경기테크노파크 검색 → 중앙부 하단 사업공고 클릭
 - 회원가입 후 기업현황 작성 → 신청서 등 제출서류 업로드
 - 온라인 신청 불가 시, 담당자 문의 후 이메일 제출 가능
 - 유형1의 경우 도입기업 단독 사업신청
 - 유형2~4의 경우 도입기업·공급기업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계획서 작성 후 사업신청
 - ※ 사업신청은 도입기업이 신청

- 문의처 :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스마트제조혁신센터 백종혁 연구원
 - 031-500-3655, intj@gtp.or.kr

4.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 및 계획서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환수 및 제재할 수 있음
- 선정평가는 유형별 과제 접수 현황에 따라 서류·발표평가의 단계별 또는 통합 발표평가 진행

- 붙임 1. 2024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신청서(유형1) 1부.
1-1. 2024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신청서(유형2~4) 1부.
2. 2024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활용계획서 1부.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4. 기업의 범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5. 기업의 범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인서 1부.
6. 이의 및 구제 신청서 1부.
7. 2024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사업계획서 1부. 끝.